# 행정명령서

- 1.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.
- 가. 처분대상: 전라북도 전역(해당 시설·업종 방역수칙 별도 붙임)
- 나. 처분기간 : 2021년 11월 1일 05시 ~ 2021년 12월 12일 24시(6주간\*) ※ 2021년 11월 1일 0시부터 ~ 05시전까지 현행 유지
  - \* 체계전환 운영 기간(4주) 및 평가 기간(2주), 2주는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
- 다. 처분내용 :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(1차 개편) 방역조치 (붙임 참고)
- 라. 처분이유
  - 정부는 백신접종률 70% 달성과 일상회복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개편한다는 방침
- 마. 법적근거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제1항 각호
- 바. 벌칙 규정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80조제7호
- 사. 과태료 규정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83조제2항, 제4항
- 아. 시설폐쇄·운영중단 규정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제3항 부터 제5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별표10
- 2.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, 제83조에 따라 1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, 위반으로 발생한모든 확진 관련 검사·조사·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수 있습니다.
- 3.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제9조에 따라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4. 처분 총괄담당자

이 름	소 속	직 급	연 락 처
김성국	전북도청 사회재난과	지방공업사무관	063-280-3797
김종수	전북도청 사회재난과	지방시설주무관	063-280-3823

2021. 10. 29.

전라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

## 참고1

###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(1차개편) 방역수칙

- ▶ '자율과 책임을 기반'으로 각 시·군별 유행상황에 따라 '거리두기 단계강화 직접시행'
- ▶ 각 시·군 특별방역시책 추가 명령 조치 가능 등 방역관리 철저

#### 공통 기본 방역수칙

- · 방역수칙 게시·안내
- · 출입자 명부 관리(전자출입명부·안심콜 등)
- · 실내 마스크 착용

- · 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
- ·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

· 일 1회 이상 소독

기타 방역수칙				
▲ 행사·집회	<ul> <li>(행사 정의) 단체·법인·공공기관·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, 설명회, 공청회, 토론회, 기념행사, 수련회, 사인회, 강연, 대회, 훈련 등과 결혼식, 장례식, 피로연, 돌잔치</li> <li>(인원) 접종자·미접종자 구분없이 100명 미만</li> <li>※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참여 시 500명 미만, 500명 이상 규모의 행사는 관할 시·군 승인 필요</li> </ul>			
▲ 사적모임	<ul> <li>(정의) 동창회, 동호회, 직장 내 회식,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, 가족•친구 등 친목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</li> <li>(인원) 접종자·미접종자 구분 없이 12명까지 가능 ※단, 식당·카페는 미접종자 4명까지 가능(미접종자 4명 + 접종완료자 8명)</li> <li>(예외) 거주공간 동일한 가족, 돌봄이 필요한 아동(만12세 이하)·노인·장애인 등, 임종시 가족·지인 등,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·종사자 등(단, 유흥종사자 제외),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'스포츠 경기 진행'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</li> </ul>			

시설명	방역수칙
▲ 유흥시설(5종) ▲ 콜라텍·무도장	<ul> <li>(운영시간) 24시 ~ 익일 05시까지 운영제한</li> <li>(밀집도) 제한 없음</li> <li>(이용 가능 대상) 접종 완료자</li> <li>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</li> <li>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) 의무 적용</li> </ul>
▲ 노래(코인)연습장 ▲ 목욕장업 ▲ 실내체육시설 ▲ 경륜·경정·경마장 ▲ 카지노	<ul> <li>· (운영시간) 제한 없음</li> <li>· (밀집도) 제한 없음</li> <li>· (이용 가능 대상) 접종 완료자 등</li> <li>·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</li> <li>· 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) 의무 적용</li> <li>※ (실내체육시설) 샤워실 이용 가능, 음악속도·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도입 계도기간 2주(그 외 시설은 1주)</li> </ul>
▲ 식당·카페	<ul> <li>(운영시간) 제한 없음</li> <li>(밀집도)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</li> <li>(이용 가능 대상) 제한 없음(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)</li> <li>(취식 가능 여부) 가능</li> <li>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) 미적용</li> </ul>

시설명	방역수칙
▲ 영화관·공연장	<ul> <li>(운영시간) 제한 없음</li> <li>(밀집도) 일행 간 한 칸 띄우기</li> <li>※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한 칸 띄우기 해제</li> <li>(이용 가능 대상) 제한 없음</li> <li>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</li> <li>※ (영화관)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취식 가능</li> <li>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) 미적용</li> </ul>
▲ 스포츠경기(관람)장	<ul> <li>(운영시간) 제한 없음</li> <li>(밀집도) 수용인원의 50%</li> <li>※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</li> <li>(이용 가능 대상) 제한 없음</li> <li>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</li> <li>※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취식 가능</li> <li>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) 미적용</li> </ul>
▲ 학원 등(좌석 없는 경우) ▲ 오락실·멀티방	(운영시간) 제한 없음     (밀집도) 시설 신고·허가 면적의 4㎡당 1명     (이용 가능 대상) 제한 없음    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     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) 미적용
▲ 학원 등(좌석 있는 경우) ▲ 독서실·스터디카페 ▲ PC방	(운영시간) 제한 없음     (밀집도) 좌석 한 칸 띄우기(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해제)     ※ (학원)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에도 좌석 한 칸 띄우기 유지     ※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해제(학원·독서실 제외)     (이용 가능 대상) 제한 없음    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     ※ (PC방) 좌석 간 칸막이 있는 경우 취식 가능     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) 미적용
▲ 놀이공원·워터파크	<ul> <li>(운영시간) 제한 없음</li> <li>(밀집도) 수용인원의 50%</li> <li>(이용 가능 대상) 제한 없음</li> <li>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</li> <li>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) 미적용</li> </ul>
▲ 실외체육시설 ▲ 상점·마트·백화점 ▲ 박물관·미술관·과학관 ▲ 도서관	(운영시간) 제한 없음     (밀집도) 제한 없음     (이용 가능 대상) 제한 없음    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     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) 미적용
▲ 전시회·박람회	<ul> <li>(운영시간) 제한 없음</li> <li>(밀집도) 제한 없음</li> <li>(이용 가능 대상)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(혼합 적용 불가)</li> <li>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</li> <li>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</li> <li>※ 종전 수칙(6m²당 1명 및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)도 택일 적용 가능</li> </ul>

시설명	방역수칙	
	· 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 · 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) 미적용	
▲ 국제회의·학술행사	<ul> <li>(운영시간) 제한 없음</li> <li>(밀집도) 좌석 한 칸 띄우기</li> <li>(이용 가능 대상)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(혼합 적용 불가)</li> <li>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</li> <li>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</li> <li>※ (국제회의) 종전 수칙(좌석 간 2칸 띄우기)도 택일 적용 가능</li> <li>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</li> <li>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) 미적용</li> </ul>	
▲ 결혼식, 돌잔치, 장례식	<ul> <li>(운영시간) 제한 없음</li> <li>(밀집도) 시설 신고·허가 면적의 4㎡당 1명,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</li> <li>(이용 가능 대상)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(혼합 적용 불가)</li> <li>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</li> <li>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</li> <li>※ (결혼식) 종전 수칙(49명+접종 완료자 201명)도 택일 적용 가능</li> <li>(취식 가능 여부) 가능</li> <li>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) 미적용</li> </ul>	
▲ 종교시설	<ul> <li>(운영시간) 제한 없음</li> <li>(밀집도) 수용인원의 50%</li> <li>※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제한 없음</li> <li>(이용 가능 대상) 제한 없음</li> <li>(취식 가능 여부) 불가능</li> <li>(접종증명·음성확인제) 미적용</li> <li>(기타) 통성기도 등 금지, 정규종교활동(예배 등)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·성가대 가능</li> </ul>	

#### [해설 및 참고사항]

- 접종 완료자 등 : 접종 완료자, PCR검사 음성자(48시간), 18세 이하, 완치자, 건강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
- 취식 불가능 : 물,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, 시설 내 취식 가능한 별도 부대시설(식당·카페 입점 등)이 있는 경우 그 공간 내에서 취식 가능
-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: 접종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허용
-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에 따른 시설별 이용가능 대상

구 분	접종완료자	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		
丁 正		PCR음성	의학적사유	18세 이하
유흥시설	0	×	×	×
경마·경륜·경정/카지노	0	0	×	×
실내체육시설	0	0	0	0
노래연습장	0	0	0	0
목욕장	0	0	0	0
입원자·입소자 면회	0	0	×	×
노인·장애인 시설이용	0	0	×	×